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2024. 11.

주식회사 동양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규약은 주식회사 동양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 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법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명칭 : 주식회사 동양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

제 **5** 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 **6** 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 28 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 1]과 같이 선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의 운용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운용관리기관 중 “삼성생명보험”을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④ 사용자는 제 3 항에 따라 간사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 일 이내에 모든 운용관리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 **7** 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법 제 29 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 1] 같이 선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의 자산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 조**(**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유 등은 〔별지 2〕와 같다.

제 3 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 **9** 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업에 소속된 임원 직책에 해당하는 자도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본다.

1. 가입자가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 10 조제 2 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 4 장 급 여

제 **12** 조**(**급여수준**)** 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② 제 1 항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임원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별도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 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 **14** 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 10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 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급여의 지급기한 등**)**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 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 3 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제 12 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조**(**급여의 지급**)** ① 사용자가 제 15 조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명의의 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제 1 항에 따른 급여를 이전 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설정하고 그 확인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 14 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17 조제 5 항에 따라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 4 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말하고,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 9 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의 이전 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6 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16 조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으로 하여금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를 청구할 경우 가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급여를 청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정한 서식의 청구서에 개별 가입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운용관리기관은 필요 시 사용자에게 가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다른 운용관리기관에도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전달하도록 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 1 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 **18** 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가입자에게 제 12 조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12 월 말일까지 납입한다.
③ 사용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 선택 등 그 근거의 제시도 함께 요청한다.
④ 사용자는 제 3 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9** 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법 제 16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100 분의 10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에는 법 제 16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법 제 16 조제 1 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제 2022-37 호)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영 제 6 조에 따른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 3 항에 따른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재정검증결과 통보 협조**)** 영 제 6 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의 제공
3.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검증결과를 통보하는 행위의 수행

제 **21** 조**(**적립 부족의 해소**)** 사용자는 영 제 6 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 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 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 **22** 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 28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 6 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간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법 제 16 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영 제 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의 통지 등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3** 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 29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 7 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 2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4** 조(수수료의 부담)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25** 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 22 조 및 제 23 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 **26** 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 25 조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 **27** 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소멸·도산
2. 퇴직금제도로의 환원
3. 퇴직금제도를 제외한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 38 조제 1 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적립부족액,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 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 27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 1 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금은 이 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제 12 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 15 조부터 제 17 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 **29** 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8** 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 **30** 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제 **31** 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

가. 최근 3 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 1 항제 1 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 1 항제 2 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③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영 제 32 조의 3 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과 교육시기, 교육내용,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타

제 **32** 조**(**수급권의 보호**)**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 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 회로 한정한다.

3. 가입자가 6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5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분의 50
2. 제 2 항제 7 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① 상시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 제 9 조의 2 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 제 9 조의 2 제 3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 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 **34(**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12 월로 한다.

제 **35** 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 1 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법령 등의 준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제 **2** 호**,2024** 년 **11** 월 **01** 일**>** **】**

제 **1** 조**(**시행일**)** 이 제도는 2024 년 11 월 1 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제도의 운용관리기관**(**제 **6** 조 관련**)** 및 자산관리기관**(**제 **7** 조 관련**)**

1. 운용관리기관

< 간사 운용관리기간 **>**

◯ 상호 : 삼성생명보험

< 비간사 운용관리기간 **>**

◯ 상호 : 한국산업은행

◯ 상호 : 우리은행

◯ 상호 : 농협은행

◯ 상호 : 중소기업은행

◯ 상호 : 국민은행

◯ 상호 : 현대해상화재보험

◯ 상호 : 하나은행

◯ 상호 : 신한은행

◯ 상호 : 아이엠뱅크

2. 자산관리기관

◯ 상호 : 삼성생명보험

◯ 상호 : 한국산업은행

◯ 상호 : 우리은행

◯ 상호 : 농협은행

◯ 상호 : 중소기업은행

◯ 상호 : 국민은행

◯ 상호 : 현대해상화재보험

◯ 상호 : 하나은행

◯ 상호 : 신한은행

◯ 상호 : 아이엠뱅크

[□□ 2]

□□□□□□□□ □□(□□) □□□

<table>
<tr><th>□ □</th><th>□ □ □ □</th></tr>
<tr><td>□□□□□□□□
□□(□□)□□</td><td>□□□ □□ □□ □ □□ □□□□ □□ □□□ □□/□□ □□ □□</td></tr>
<tr><td>□□□□ □ □□</td><td>
<table>
<tr><th>□ □</th><th>□□ □□(□□)</th></tr>
<tr><td>□□□□</td><td>□ □□□□□(□□□□□, □□□□□, □□□)
□ □□□□□□(□□□□ □□, □□□, □□□)
□ □□□□□(□□□□□□□)</td></tr>
<tr><td>□□□□</td><td>□ □□□□□□(□□ □ □□, □□□ □□□)
□ □□□□□□(□□□□□□, □□□□□□)
□ □□□□□□□(□□□□, □□□□□)</td></tr>
</table>
</td></tr>
<tr><td>□□□□
(□□ □□□ □□□□
□□)</td><td>□ □□ □□
- □□□□, □□□□, □□□□□
□ □□ □□
- □□□□ □□□□ □□□□ □ □□□□ □□□□ □□□□ □□□□□□□ □□□ □ □□ □□□ □□</td></tr>
<tr><td>□□□□□
□□□□</td><td>□□□ □□□ □□ □□ □□</td></tr>
<tr><td>□□</td><td>□□□ □□□ □□□ □□ □□□ □□□ □□ □□□ □□□</td></tr>
</table>